

[별첨 2]

연구 결과보고서

성명	박정호	구분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연구제목	한글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대응과정의 구조적 장벽 - 활동가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	
	영문	Structural Barriers in the Response Process to Industrial Accidents among Non-professional (E-9) Migrant Workers: A Qualitative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Activists	
연구기간	2025.3.1 ~ 2025.12.31		
색인어	한글	고용허가제(E-9비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활동가	
	영문	Employment Permit System, Migrant Worker, Industrial Accident, Activist	

○ 결과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닌 제도의 '구조적 장벽'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응 과정은 '고용허가제의 한계', '위험의 노출', '드러나지 않은 산업재해', '미등록 체류자 양산 구조'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E-9 체류 자격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 제한과 체류 자격의 사업주 종속성으로 인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직면하지만, 해고나 체류 연장 불허에 대한 두려움과 행정 접근의 장벽으로 인해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며 산재를 은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치료 지연과 행정 절차의 장기화,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적 해결 대신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고, 그 결과 합법적 보호를 상실한 채 미등록 체류 상태로 전환되는 악순환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E-9 체류 자격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은폐와 미등록화가 언어 능력이나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구조와 행정적 대응의 한계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임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내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지역·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 산업재해 신고 의무 강화, 산업재해 치료 기간 중 체류기간 자동 연장 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첨부: 1. 최종 연구결과물(10권)

이와 같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31일

제출자 : 박정호 (박정호)

2025 인재양성 프로그램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최종 결과보고서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대응과정의 구조적 장벽: 활동가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

Structural Barriers in the Response Process to Industrial Accidents
among Non-professional (E-9) Migrant Workers
: A Qualitative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Activists

2026.01.31.

박 정 호

제 출 문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대응과정의 구조적 장벽: 활동가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의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31일

박정효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초록

이름	박정호	구분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연구제목	한글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대응과정의 구조적 장벽 - 활동가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	
	영문	Structural Barriers in the Response Process to Industrial Accidents among Non-professional (E-9) Migrant Workers: A Qualitative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Activists	
연구기간	2025.3.1 ~ 2025.12.31		
색인어	한글	고용허가제(E-9비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활동가	
	영문	Employment Permit System, Migrant Worker, Industrial Accident, Activist	

본 연구는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닌 제도의 '구조적 장벽'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응 과정은 '고용허가제의 한계', '위험의 노출', '드러나지 않은 산업재해', '미등록 체류자 양산 구조'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E-9 체류 자격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 제한과 체류 자격의 사업주 종속성으로 인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직면하지만, 해고나 체류 연장 불허에 대한 두려움과 행정 접근의 장벽으로 인해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며 산재를 은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치료 지연과 행정 절차의 장기화,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적 해결 대신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고, 그 결과 합법적 보호를 상실한 채 미등록 체류 상태로 전환되는 악순환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E-9 체류 자격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은폐와 미등록화가 언어 능력이나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구조와 행정적 대응의 한계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임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내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지역·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 산업재해 신고 의무 강화, 산업재해 치료 기간 중 체류기간 자동 연장 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fficulties faced by migrant workers under the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isa in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approaching them not as issues of individual adaptation but as structural barriers embedded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explore the structural mechanisms underlying these difficul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frontline migrant worker support activis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he analysis identified four key categories shaping migrant workers' responses to industrial accidents: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xposure to hazardous work*, *concealed industrial accidents*, and *a structure producing undocumented migrants*. Due to restrictions on workplace mobility and the dependency of residence status on employ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migrant workers with E-9 status are concentrated in hazardous jobs often avoided by native workers. Within this institutional context, they face persistent risks of workplace injuries. However, fear of dismissal or denial of visa extension, along with barriers to access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often leads them to accept employers' informal handling of compensation claims or to forgo their rights, resulting in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Furthermore, delays in medical treatment, prolong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debt burdens incurred during the migration process frequently lead workers to leave their workplaces rather than pursue institutional remedies. As a result, they lose legal protection and transition into undocumented status, reproducing a cycle of social ex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transition to undocumented status among E-9 migrant workers are not simply the result of language barriers or individual shortcomings. Rather, they represent structural outcomes produced by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respons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measures, including expanding the grounds for workplace transfer with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stablishing region- and industry-specif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ystems, strengthening mandatory reporting of industrial accidents, and introducing an automatic extension of residence during the treatment period for industrial injuries.

요 약 문

I. 제목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대응과정의 구조적 장벽: 활동가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

II. 연구배경 및 목적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 현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일상이 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 통계나 법적 제도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산재를 입은 이후의 구체적인 '대응 과정' 과 그 속에서 마주하는 현장의 장벽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당사자 직접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을 조력한 활동가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이들이 직면하는 구조적·제도적 장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대응 과정의 이면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활동가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해 대상자를 섭외한 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1~2시간가량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인터뷰 녹취록을 바탕으로 질적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구성주의 근거이론의 코딩 방법을 차용함으로써 개념과 하위 범주, 상위 범주를 도출하고 각 범주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은 네가지 범주가 상호 연관되어 형성하는 구조적 장벽임이 확인되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고용허가제의 종속적 한계로 인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 노동 환경에 집중적으로 노출된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고나 비자 연장 불허에 대한 두려움, 복잡한 행정 장벽 탓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공상처리 강요에 순응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된다. 결국 합법적 구제를 시도하여도 치료 지연과 행정 절차의 장기화,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 현장을 이탈하게 되어 어떠한 제도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여 다시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배제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V.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은폐와 미등록화 현상이 개인적 요인에 국한되기보다 고용허가제가 형성하는 제도적 제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제도적·정책적 보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놓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 사업장과 3D 업종의 작업환경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안전보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와 은폐를 완화하기 위한 감시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체류 자격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절 연구 구성

2장 선행연구 검토

1절 한국의 비전문(E-9) 이주노동자 현황

2절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실태와 연구동향

3장 연구 방법

1절 연구참여자

2절 자료수집

3절 분석방법

4장 분석결과

1절 개념과 범주

2절 개념과 범주의 관계 탐색

5장 결론

1절 논의 및 제언

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대응과정의 구조적 장벽

- 활동가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

박정효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일자리를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노동 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De Castro et al., 2006; Kim et al., 2020). 국제이주기구(IOM)의 『World Migration Report 2024』에 따르면 전 세계 이주노동자는 약 1억 6,9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국제적 이동의 확대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45만 명을 넘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92만 3천 명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24).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에서 기술적, 구조적 발전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산업 구조의 복잡성과 다양한 위험요인이 중첩된 작업 환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편이며(김석호, 2023),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 또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권동희, 2023). 이러한 문제는 건강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직업적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 제도와 정책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김창엽 외, 2015). 나아가 산업안전보건 연구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단순한 인적·조직적 요인으로 환원하기보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요인과 예방조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 현장의 맥락을 반영한 경험적 연구가 중요하다(류현철

외, 2022; 김윤배, 2017).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단신 뉴스로 처리될 만큼 일상적인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최정규, 2024). 근로복지공단의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처리현황」에 따르면 승인된 산업재해 사고는 8,790건으로 집계된다.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조선업 경기 회복과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와 함께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곽용희, 2024). 이러한 경향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작업 환경과 의사소통의 제약 등으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강민주, 2019; 노지현·강선경, 2016). 한국에서는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규모에 대응하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왔으나,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높은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다(한정훈, 2019; 송지영·정종민, 2025).

제도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체류 자격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 역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강민주, 2019).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한 제약을 동반하며, 특히 미등록 이주민이나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산재 제도에 접근하는 데 더 높은 장벽에 직면한다(이창규, 2023).

이주노동자 지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비롯해 종교단체와 이주민 지원단체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상담과 지원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응해 왔다. 특히 산업재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활동가와 지원단체는 정보 제공, 행정 절차 지원, 권리 옹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거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소지역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은 상당 부분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2023년 9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된다(정윤채 외, 2023).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부족, 효율성 중심의 정책 기조,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현장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정책적 인식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들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로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문제 제기는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대응을 거쳐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데 기여해 왔다(정진주 외, 20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8년 이후 세부 질환에 대한 인정 기준과 판단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는 노동계의 문제 제기와 사회적 논의,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적 대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장벽을 분석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이후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활동가의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나 법·제도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문제와 산업재해 지원 체계의 한계를 활동가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특히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장벽, 정보 접근의 제약, 행정·법적 절차 등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한계를 분석하고, 이주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 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절 연구 구성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비전문 취업 인력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 E-9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먼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노동환경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산업재해의 실태를 살펴보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동향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며 연구참여자,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2장 선행연구 검토

1절 한국의 비전문(E-9) 이주노동자 현황

이주노동자¹란 자신의 국적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급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과거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국제이주기구, 2011).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일정 기간에 한해 체류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노동 이주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해진 규모의 인력만 입국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노동 이주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주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기반한 자발적 이동으로 간주되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동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김춘수, 2022).

2003년에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이 확대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환경, 권리 침해, 사회적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 이주를 둘러싼 제도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권경득 외, 2021; 김춘수, 2022).

한국에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취업의 경우 해당 체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한 비자 유형²에 따라 체류 기간이 상이하며, 일부 체류 자격은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되기도 한다(권경득 외, 2021).

¹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조(1)

² <부록> 장기체류 자격(제12조 관련)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0,783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566,961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미등록 외국인³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397,522명⁴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통계는 공식적인 취업자격 외에도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취업 자격이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된다. 당시 정부는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F-1) 방문동거, (F-3) 동반 체류 자격 등 일부 체류 자격에 한해 노동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이후 (D-2) 유학생, (H-2) 방문취업 동포, (D-1) 문화예술, (D-10) 구직 자격 외국인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F-6)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전용일, 2023).

그러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이외에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의 인적 특성이나 노동시장 내 역할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이상지·최서리, 2024).

이에 국내 체류 자격별 상주 외국인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2024년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⁵를 참조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중 취업자는 64.7%에 해당하며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비전문 취업으로 구분되는 이주노동자는 2024년 5월 기준 303,00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

³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⁴ 법무부에서 구분해 보고하는 용어 중 등록은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공식 등록된 경우를 의미, 단기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거소는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지 신고 및 신분증 발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법체류자로 구분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134,580명), 단기(260,818명), 거소(2,124명)에 해당한다.

⁵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포함하여 국내 체류 이민자를 조사한다.

<표 1> 체류 자격별 성·연령대·교육수준별 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외국인 (천명)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남성	여성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외국인	1,561	57.8	42.2	29.7	27.7	15.5	13.7	13.5	8.7	17.1	43.1	31.1
비전문취업	303	90.9	9.1	45.2	45.5	9.3	-	-	7.1	17.5	50.1	25.4
방문취업	83	57.3	42.7	8.1	11.2	22.4	50.4	7.7	13.4	27.3	44.4	14.8
전문인력	66	71.8	28.2	27.8	50.4	17.9	3.2	0.8	4.0	8.7	27.9	59.4
유학생	200	46.7	53.3	90.1	9.2	0.8	-	-	-	0.1*	70.2	29.7
재외동포	402	50.7	49.3	7.7	17.5	16.6	20.5	37.7	11.7	21.8	38.0	28.5
영주	141	50.7	49.3	3.9	22.5	26.2	27.2	20.2	6.9	21.7	42.7	28.6
결혼이민	122	20.4	79.6	16.6	41.5	23.9	12.3	5.8	9.8	16.2	38.9	35.2
기타	244	56.4	43.6	26.5	32.9	20.0	14.0	6.6	13.3	19.8	26.4	40.5

자료: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로 분류되는 이주노동자(E-8, E-9, E-10, H-2, F-4) 이외에도 다양한 체류 자격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외국인 취업자의 비자 유형별 인원 수(2025년 3월)

(단위:명)

E7(특정 활동)	E8(계절 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 취업)	F1(방문 동거)	F4(재외 동포)	F5(영주)	F6(결혼 이민)	H2(방문 취업)
68,316	36,289	338,534	21,603	93,630	555,822	208,596	150,391	92,321

자료: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5.03)

이주노동자 가운데 일반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을 가진 노동자는 주로 단순노무 직종을 중심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E-9 노동자의 규모는 2012년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이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시기에는 외국인력 유입이 제한되면서 크게 감소하였다(이상지·최서리, 2024).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고용

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허용 업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23). 2025년 기준 E-9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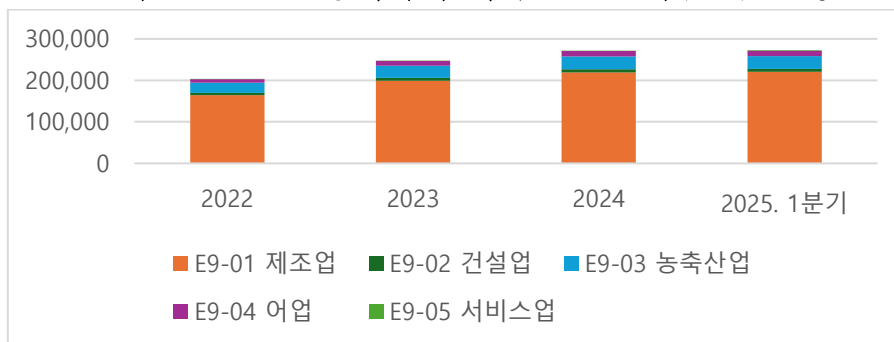
<표 3>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현황

(단위: 명)		E9-01	E9-02	E9-03	E9-04	E9-05
연도	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2022	203,121	164,145	5,848	24,138	8,707	283
2023	247,191	199,269	7,013	29,250	11,191	468
2024	271,925	219,507	7,012	31,046	13,282	1,032
2025. 1분기	273,139	220,423	6,942	31,232	13,296	1,13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E-9 체류 자격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대체로 영세 사업장이 많아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전용일, 2023). 특히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상당수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로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서 고용되면서 물리적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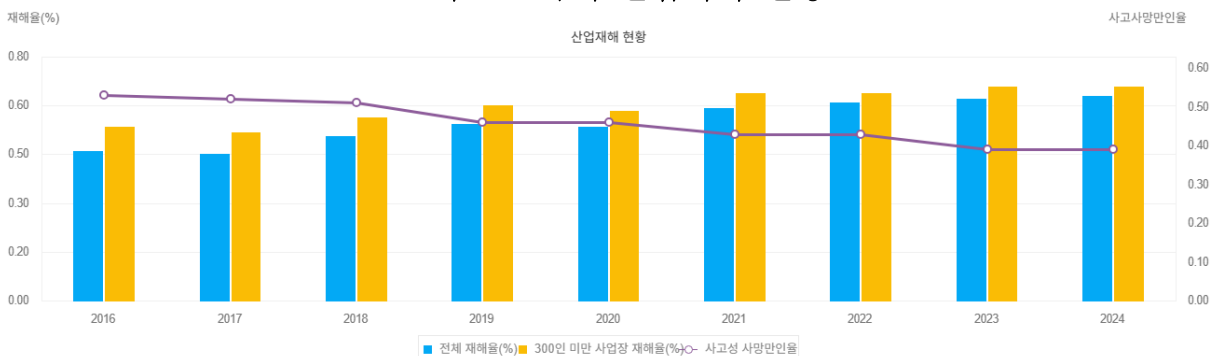
농어업 분야에서는 계절근로제의 확대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농가 단위의 고용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비스업에서도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업은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로 인해 이주 노동자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경우 비공식적 고용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절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실태와 연구동향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된 재해자는 총 142,771명이며, 이 가운데 사고재해자는 115,773명, 질병재해자는 26,998명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관련 통계는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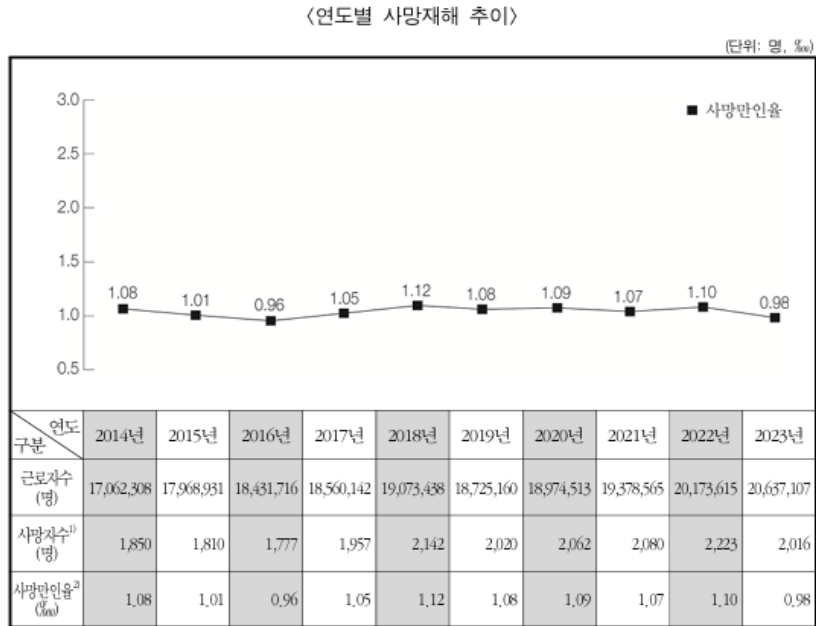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산업재해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한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2023년 기준 승인된 사고는 8,790건, 질병은 307건으로 집계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1년 102명,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85명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47명으로 집계된다(박승봉, 2025).

<표 4> 연도별 사망재해 추이



1) 사망자수는 재해 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2) 사망만인율(%) = $\frac{\text{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자료: 고용노동부, 2023 산업재해현황분석

그러나 앞서 제시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통계는 실제 이주민 사망 규모와 비교할 때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2024)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이주민 사망자는 3,34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은 137명으로 전체 사망의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고	신청	6,381	7,405	7,777	7,814	8,184	8,497	9,011
	승인	6,178	7,220	7,600	7,647	8,003	8,285	8,790
질병	신청	174	176	277	248	371	389	532
	승인	79	94	152	131	196	224	307

자료: 근로복지공단, 외국인근로자 산재처리현황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사망으로 신청되었으나 인정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32명이었으며, 민간 보험사⁶ 자료에서 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은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45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서 변사나 무연고 사망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사망 정보가 확인되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자는 2022년 기준 214명⁷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으로 파악되는 사례는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상처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권동희, 20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규정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 2023).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공상처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공식 통계에 나타나는 산업재해 규모가 실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통계는 주로 보상 절차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기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망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산업재해의 범위를 보다 넓게 고려할 경우 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⁶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입국 후 의무로 삼성화재 ‘외국인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는 산업재해가 아닌 사망과 영구 장애에 한정되어 있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김승섭 외, 2024).

⁷ 137명(산업재해 인정 사망자) + 32명(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사망신청 미인정자) + 45명(민간 보험사 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은 고용허가제(E-9) 사망자)를 합산한 수치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산업재해로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19.8%로 나타나 약 5명 가운데 1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E-9 체류 자격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원인으로는 작업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한 경우(15.7%),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사용(15.7%), 본인의 실수(11.8%)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반면 질병 발생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23.7%), 무거운 짐이나 기계 사용(23.7%), 유해물질 노출(5%)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E-9 이주노동자의 경우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22.5%)과 유해물질 노출(10.1%)이 지적되었다(김기태, 2021).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2024)는 이주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주요 사회적 요인을 크게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사업주의 폭력이나 위력이 행사되는 근무환경, 장시간·불규칙 노동과 잦은 야간노동, 저임금과 임금체불 문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환경,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제한된 의료 접근성, 경기 침체로 인한 갑작스러운 임금 감소와 실업, 그리고 산업안전 보호체계에서의 배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실제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산업재해 관련 교육이나 대응 실무에 대한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에 산업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안전 및 보건 일반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를 경험하기 전까지 산업재해 보상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권동희, 2023).

산업재해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노동자조차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제약을 겪는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제도 접근성과 교육, 정보 제공 체계 등 제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력의 산업재해 개선 방안을 다룬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적·인간적·제도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박재현 외, 2017). 정부와 민간 단체의 노력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송연이 외,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는 현재까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산업재해나 안전·보건을 다룬 연구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주 외, 2017). 한정훈(2019)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대전 지역 이주노동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언어 및 문화적 소외, 안전불감증, 차별적인 안전 교육, 불평등한 노동 인권 등 네 가지 주요 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노지현(2016)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남성 이주노동자의 삶을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산업재해 이후 경험되는 다양한 어려움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주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안전보건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그 취약성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Kim et al., 2020).

그러나 기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의 취약성을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노동환경의 문제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 구조적 제도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신지원·채준호, 2024). 또한 산업재해 발생 특성이나 노동환경의 취약성을 밝히는 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후 어떠한 대응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지원체계의 장벽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직면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자체뿐 아니라 산업재해 이후 노동자가 어떠한 대응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장벽에 직면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와 현장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국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과 관련 제도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관련 통계자료, 산업재해 현황조사, 법률 및 개정안, 고시 등의 1차 자료와 이주노동자와 산업재해 관련 보고서, 웹사이트, 기사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후 현장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장벽과 현장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지원 하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1절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경험한 E-9 체류 자격 이주노동자를 직접 조사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 관여 해 온 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는 사망, 본국 귀국, 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심층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hannon, 2016; 강명주 외, 2025). 이에 본 연구는 활동가의 현장 경험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김주영(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단체와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협력기관 현황,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선별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관련 활동을 지원,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나의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 법률 및 의료지원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를 포

함한 활동의 수행에 동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비롯한 어려운 일을 도운 상담활동에 참여한 활동가를 인터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최소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활동가로 선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사례 경험을 통해 산업재해 문제의 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질적 연구에서 적절한 표본 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근거이론 연구의 경우 20~30명을 적절한 표본 수로 제시하기도 하나(Creswell & Poth, 2018), 표본 수를 사전에 정하여 표집을 진행하는 방식은 양적 연구의 논리를 질적 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적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Fugard & Potts, 2015; Fusch & Ness, 2015).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표본 수는 연구 목적과 자료의 이론적 포화도(theoretical saturation)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인터뷰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개인 정보와 소속 기관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참여자 섭외는 연구자의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기존 참여자의 추천을 통해 추가 참여자를 확보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인터뷰에 이전에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원활한 면담 진행을 위해 사전 질문지를 공유하였다.⁸ 이러한 절차를 통해 <표 6>과 같이 총 7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⁸ IRB심의 요청에 따라, 면담대상자 공고문을 만들어 공유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소개와 내용을 요약하여 사전에 공유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6> 연구참여자 인구학적 특징

번호	구분	연령대	성별	경력	근무지	활동지역
1	A	40대	여	21년	화성	대구, 화성
2	B	50대	남	10년	서울	서울
3	C	40대	여	15년	화성	거제, 부산, 화성
4	D	50대	남	17년	안산	안산
5	E	40대	여	14년	수원	수원
6	F	40대	남	10년	의왕	경기북부
7	G	30대	남	5년	홍성	충청남도

2절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사전에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정확한 기록과 분석을 위해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활동 지역을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약 1~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녹음된 심층 면담 자료와 활동가 사례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사례,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 등을 함께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절 분석방법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자료 수집과 해석, 분석이 상호작용 하에 이루어진다(Stake, 2000).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상황과 맥락,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 생성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수집된 자료는 문서화하고, 심층 면담 자료를 전사하여 면담 자료와 관련 수집 자료의 비교 등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원자료들을 반복해서 비교하면서 자료 속에 드러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상황, 행동, 쟁점들을 추적하여 귀납적으로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는 구성주의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연구 참여자의 발언을 기반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는 범주 합산(categorical aggregation)을 수행하였다(Stake, 2000).

근거이론 연구는 Glaser의 실증주의적 접근, Strauss와 Corbin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그리고 Charmaz의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으로 발전해 왔다. Charmaz의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은 사회적 현상이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내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형진, 2023).

이에 본 연구는 특정 패러다임 모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자료에 기반한 분석을 중심으로 1차 코딩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특히 개념과 개념, 개념과 범주, 범주와 범주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장벽과 그 관계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4장 분석 결과

1절 개념과 범주

연구 참여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활동가들로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단순한 개별 사례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전사한 후 줄 단위 분석(line-by-line coding)을 통해 1차 코딩을 수행하였다. 이후 유사한 의미를 갖는 개념들을 묶어 하위 범주를 도출하고, 다시 이들 하위 범주 간의 공통성과 관계를 검토하여 상위 범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벽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개념과 범주는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개념과 범주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사업장 이동 제한	제도적 종속 구조	고용허가제의 한계
비자 연동		
체류 자격 종속		
고용허가 중심 구조	제도적 통제 메커니즘	
노동자 권리 제한		
제도 접근 불가		
사업주 권한 집중	권력 비대칭과 행정적 방입	
노동감독 부재		
정부의 비 개입		
3D 업종 집중 배치	위험 노동	위험의 노출
위험노동 전가		

반복적 사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교육 부재			
보호장비 미지급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정보 단절			
관리자 및 동료 안전 불감	구조적 위험 노출		
경험에 의존			
사업주의 신고 회피	산재 은폐 행위		
공상처리 강요			
회사의 단독 처리			
신고절차 복잡	제도 접근 장벽	드러나지 않은 산업재해	
통역 부재			
행정접근 어려움			
신고 시 불이익 우려	신고 포기 자기 책임화		
체류 불안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			
산재 후 해고	체류 자격 상실 과정		
체류기간 만료			
비자 연장 불허			
복귀 불가	제도적 배제 결과		미등록 체류자 양산 구조
미등록 체류 결정			
제도적 보호 상실			
재노동 진입 실패	배제의 재생산		
사회적 낙인			
지속적 불안			

1. 고용허가제의 한계

연구참여자들은 E-9 체류 자격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사업장 이동 제한과 체류 자격의 종속 구조 등 고용허가제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문제가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8월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 틀은 유지되어 왔으나,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E-9 체류 자격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구조 속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거나 통제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주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재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위 범주인 ‘제도적 종속 구조’에는 사업장 이동 제한, 산업재해 이후 체류 자격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고용허가제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가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며, 이러한 제도적 구조가 산업재해 피해 이후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처음에 들어올 때 3년 계약으로 들어오는데 1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죠. 그런데 이 갱신이든 뭐든 이제 여기의 주체는 누구냐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이거든요. 사업주가 (노동자를) 마음에 들어야 되고 사업주가 동의를 해줘야만 이분이 비자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은 사업장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지역 인구 소멸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간의 이동도 아예 막아 났어요.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를 저희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고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분이 입국과 나중에 출국하는 그 전 과정에 사실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참여자 A).

하위 범주인 ‘제도적 통제 메커니즘’에서는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행동과 대

응이 통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고용허가제 중심의 노동 구조, 노동자 권리의 제한, 제도 접근의 어려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존재하며,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관련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통제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가 있고, 방문 취업제도 있고, 지역 특화형 비자도 있고, 지금 비자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계절 근로자 제도도 있고 한데요. (중략)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면 계약 과정부터 사실은 이분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조건을 받고 일하는지 몰라요.

(사업장을 이동하려면) 임금 체불이 몇 개월 이상 될 경우 내지는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 있었거나 성폭행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참여자 A).

하위 범주인 ‘권력 비대칭과 행정적 방임’에서는 사업주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와 노동감독의 부재, 정부의 소극적 개입 등 권력 불균형과 행정적 대응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노동청에 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노동청에서) 와서 빨리 조사해 달라 이렇게 따졌더니 사장님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차적이에요. 사장님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아니 근데 그 노동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거기를 쫓아왔을 텐데... 그리고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아주 아주 자질이 안 되는 감독관들도 있는데요(참여자 D).

2. 위험의 노출

‘위험의 노출’ 범주는 이주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위험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위험 노동’, ‘안전관리 사각지대’, ‘구조적 위험 노출’이라는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특히 ‘위험 노동’은 E-9 체류 자격을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한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업종은 힘들고 (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노동 환경을 특징으로 하며,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 환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일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은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계속 짊어 처리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이주 노동자가 하는 일은 한국 사람이 이 돈으로 안 오니까 넘기는 거잖아요. 농업 특히 심한 거고 그러면 왜 산재 당하냐 하면 이 돈 받고 이렇게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안 하니까 하는 거 사실 한국인 사업장 중에 돈 많이 주는 데 중에 사람 죽어나는 데 많아요. (중략) 사실 외국인이라고 특히 위험하고 내국인이라고 말이 안 통해서 특히 덜 위험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건 아니고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위험한 일을 시키니까 위험해지는 거라는 생각은 좀 해요(참여자 G).

또 다른 하위 범주인 ‘안전관리 사각지대’는 ‘안전교육의 부재’, ‘보호장비 미지급’,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안전정보 단절’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장비 착용을 제한한 상태에서 위험 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입국 초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2박 3일 교육이 사실상 안전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더불어 산업과 사업장마다 사용하는 기계와 장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음 접하는 이주노동자에게 현장 맞춤형 안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제가 옛날에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일부러 취업을 해서 몇 개월 다녀본 적도 있었거든요. 도금 공장이었는데 거기에 진짜 해골 바가지 같은, 진짜 해골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 독성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려졌는데 거기서 막 세척을 하시는데 방독면도 안 쓰고... 방독면을 안 쓰는 이유는 방독면을 쓰게 되면 일을 빨리 빨리 못하니까 사장이 이제 방독면 쓰고 있으면 와서 이걸 떼어버려요(참여자 A).

이주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배경에는 사업주와 동료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경험에 의존하여 작업을 처리하려는 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기계로 처리해야 할 작업을 인력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 없이 노동자에게 단순히 작업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위험이 방치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열악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고쳐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고쳐요. 안 고치고 그냥 적기에 투자 해서 많이 이윤 남기기만 사업주들이 원하고요. 그래서 기계로 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로 실제로 손으로 일을 해요(참여자 G).

3. 드러나지 않은 산업재해

이 범주는 산업재해가 공식적인 산재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산재 은폐 행위’, ‘제도 접근 장벽’, ‘신고 포기 및 자기책임화’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산업재해가 공식적인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산재 은폐 행위’ 하위 범주에서는 사업주의 산재 신고 회피, 공상처리 강요, 회사의 단독 처리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유도하거나 산업재해를 개인 상해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처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회사가 치료와 피해 보상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1년에 저 혼자 이주노동자 상담을 500건 이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사업장을 다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산업재해 관련 건수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산재로 처리할지 공상으로 처리할지 결정 권한은 이주 노동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주에게 있어요. 이주 노동자들은 사실 그러니까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정보가 거의 없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해요(참여자 A).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동료 때문에) 다쳤는데요. (중략) 그러면 이게 산재잖아요. 그런데 사업주가 500만 원 줄 테니까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의료보험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고요. 병원 기록에도 보면 축구하다 다쳤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참여자 C).

‘제도 접근 장벽’ 하위 범주에서는 절차 복잡, 통역 부재, 행정 접근 어려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경험할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제도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과 관련된 정보를 내국인에 비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과 경위에 대해서도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행정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이 신고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이주노동자의 국적이 다양한 만큼 사용 언어 역시 다양하지만, 현장에서 모국어 통역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병원 원무과 직원조차 사업주의 영향이나 부담을 고려하여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언제 다쳤어요? (물으면) 며칠 전에 다쳤다고 답해요. 며칠 전이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본인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해줘야 하잖아요. 증거 자료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고, 몇시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다쳤다. 그때 (상황을) 증인해줄 수 있는 목격자가 누구누구 있다. (중략)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상식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자체를 못해요. (이들은) 겁이 났고 떨리고 긴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요(참여자 F).

또 다른 하위 범주인 ‘신고 포기과 자기 책임화’에서는 산업재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체류 자격 유지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산업재해 이후 치료와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을 자신의 과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인식이 산업재해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내면화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신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산재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해고될 가능성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를 이주자들은 사실 몸으로 제일 먼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의 케이스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가 많고요(참여자 A).

(산업재해에 대해) 모르는 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럼 내가 잘못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했는데 안 조심했어요? 이런 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G).

4. 미등록 체류자 양산 구조

E-9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결과적으로 미등록 체류자로 전환되는 구조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체류 자격 상실 과정’, ‘제도적 배제 결과’, ‘배제의 재생산’ 이라는 세 가지 하위 범주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위 범주인 ‘체류 자격 상실 과정’에서는 산업재해 이후 해고, 치료 과정에서 체류 기간 만료, 사고 이후 비자 연장 불허 등의 상황이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산업재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권리 구제를 시도할 경우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리 기간이 수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이주노동자의 남은 체류 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주노동자조차 비자 만료라는 시간적 제약에 직면하여 미등록 체류 상태로 전환되거나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오래 계신 거예요. (중략)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 가도 딱히 친구도 없고 이제 생활 터전이 다 이제 여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쳤어요. 일하다가. 그런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치료동안) 비자 줘야 되잖아요. 또 비자 연장을 안 해줘요. 이렇게 미등록 체류자가 돼요. 혹은 산업재해 (치료기간이) 끝나면 비자 안 줘요(참여자 B).

하위 범주인 ‘제도적 배제 결과’는 복귀 불가, 미등록 체류 선택, 제도적 보호 상실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E-9 체류 자격 이주노동자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본국으로의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입국 이전에 브로커 비용이나 가족의 대출 등을 통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경험하거나 노동 착취를 겪더라도 채무를 상환하기 전까지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하고 미등록 체류 상태로 전환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계절 근로자 제도로 노동자 분이 들어오는데 돈을 몇 천만원을 썼어요. 최근 사례인데 이제 (E-9체류 자격인 줄 알고) 들어와서 실제로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 일할 수 있는 게 6개월 정도인 거예요. 이분이 기간동안 일을 다 해도 사실은 브로커 비용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미등록 체류인 거죠(참여자 A).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그 집안이 집안이 대출을 한대요. 이 노동자가 이제 한국에 가서 다달이 150만 원을 번다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다달이 보내 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약 4년 있을 수 있는데 1년이면 천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허름한 집도 계속 다 보수하거나, 아니면 집을 짓기를 시작하거나, 당장 오두막 부모님 집을 짓기 시작하거나 해요. 돈도 벌기 전에. 그런데 이 노동자가 (한국에) 왔는데 건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참여자 D).

또 다른 하위 범주인 ‘배제의 재생산’은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배제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재노동시장 진입 실패, 사회적 낙인, 지속적인 불안 등이 도출되었다.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된 이후 이주노동자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공적 보호체계에서 대부분 배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산업재해 처리를 시도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이주노동자가 다시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진입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배제의 재생산과 미등록 체류의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입국으로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미등록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강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고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밤에만 일했어요. 이불 공장이었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추가적으로) 계속 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4명이서 할 일을 혼자 했어요. 그런데 단속이 워낙 심하니까 그냥 기숙사에서만 지냈어요.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체벌도 되게 심했던 거죠. 사업장이 일은 되게 많고, 하루에 야간 노동이 한 14시간 이상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작업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것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중략) 사업주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과 노동 강도의 문제가만을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서 단속, 추방으로부터 불안하고 일상이 파괴되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노동자의 죽음을 갖고 그냥 원인을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산재는 맞죠. 그런데 딱 하나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참여자 A).

2절 개념과 범주의 관계 탐색

1차 코딩이 자료에서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면, 2차 코딩은 전사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개념과 개념, 개념과 범주, 범주와 범주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분석 단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를 토대로 자료를 재검토하고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범주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앞서 도출된 네 가지의 범주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상호 연관되며 구조적인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범주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구조에서 형성된 종속적인 노동 조건이 이주노동자를 위험 노동에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도 접근의 장벽과 사업주의 산재 은폐 행위로 인해 산업재해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체류 자격 상실의 위험이 발생하며, 이는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체류 상태로 전환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고용허가제의 한계’는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사업장 이동 제한, 비자와 고용관계의 연동, 사업주에게 집중된 권한 등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를 경험하더라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노동감독의 부재와 행정적 방임은 이러한 종속 구조를 더욱 강화하며,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도 노동자가 제도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환경을 형성한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은 이주노동자를 ‘위험의 노출’이라는 노동환경으로 연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E-9 체류 자격 노동자들은 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며, 이는 반복적인 사고 위험을 내포한 노동환경을 형성한다. 또한 안전교육의 부족, 보호장비

미지급,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안전 정보 전달의 단절 등은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위험 노동 환경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드러나지 않은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주의 산재 신고 회피와 공상처리 강요, 회사의 일방적 사고 처리 등은 산업재해를 공식적인 제도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신고 절차의 복잡성, 통역 부재, 행정 접근의 어려움과 같은 제도적 장벽은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보상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체류 자격 상실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산재 신고를 포기하거나 사고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산업재해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되거나 은폐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미등록 체류자 양산 구조’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이후 해고되거나 치료 과정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기존의 취업비자(E-9)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일부 노동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체류 자격을 ‘기타 체류 자격(G-1)’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체류 자격은 일정 기간마다 출입국 관리 기관을 방문하여 체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요구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산업재해 치료와 사건 대응 과정에서 이러한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체류 자격 유지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게 미등록 체류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노동자는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등록 체류 상태로 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등록 체류자가 된 이후에는 제도적 보호로부터 더욱 배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고,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 체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대응 자체

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은 노동자가 다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재진입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대응의 어려움과 미등록 체류 문제가 상호 강화되는 ‘배제의 재생산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들은 제도적 종속 구조에서 시작된 위험 노동의 배치가 산업재해의 발생과 은폐로 이어지고, 이러한 대응의 어려움이 다시 체류 자격 상실과 미등록 체류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산업재해 대응의 장벽이 형성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단순한 개인적 사고나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제도적 구조와 노동시장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5장 결론

1절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층적인 구조적 장벽을 활동가의 현장 경험과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9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제기된 개인적 적응 문제를 넘어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장벽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개별 사업장 차원의 개선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해 온 활동가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통계로 포착되기 어려운 ‘드러나지 않은 산업재해’의 실태와 산업재해 이후 ‘배제의 재생산’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구조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활동가들이 조언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고용허가제 내 사업장 변경 사유의 실질적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주 종속성을 강화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놓이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안전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는 주로 3D 업종과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단순한 다국어 교육 제공을 넘어, 지역별 산업 구조와 작업 환경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체계와 감시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장에서

공상 처리 강요나 산재 미보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고려할 때, 사업주의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산업재해 은폐 사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재해 치료 및 보상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재 처리 기간과 비자 만료 시점 간의 불일치는 이주노동자가 권리 구제 과정에서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산재 신청이 접수된 이후 치료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는 단순한 안전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 제도와 노동시장 구조가 결합된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9 이주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의 구축은 개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향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과 지원 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활동가의 현장 경험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E-9 체류 자격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접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전체 이주노동자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나 업종에 따라 산업재해 대응 환경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는 연구 참여자가 활동하는 특정 지역과 사례의 맥락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활동가와의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

하였기 때문에, 관련 통계자료나 계량적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 사례의 발생 빈도나 확산 규모, 반복성 등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경험과 구조적 장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제안된 정책적 개선 방안이나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제도 개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이주노동자와 지원 단체, 행정기관 간의 상호작용 과정과 대응 전략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 연구와 함께 통계 자료나 정책 자료를 결합한 혼합연구 방법을 통해 산업재해 대응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주, 류현철, & 김승섭. (2025). 작동하지 않는 제도, 보상받지 못하는 죽음: 사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신청과 입증 과정에서의 제약. *비판사회정책*, (88), 137-183.
- 강민주. (2019).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공익과 인권*, 19(0), 3-34.
- 고용노동부. (2023.11.27). 보도자료_ 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 허용.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860 (검색일: 2025.7.5.)
- 곽용희. (2024. 6. 25.). 근로자 3% 외국인, 사망산재는 4배 많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510511>
- 국제이주기구. (2011). 이주용어사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권경득, 이광원, 임동진, 임정빈, 오정은, 장익현, 진종순, 하정봉, 허준영. (2021). 고용·노동 분야의 다문화 정책수단 연구. 충청남도: 선문대학교 출판부.
- 권동희. (2023). 산재를 말하다. 서울: 숨쉬는책공방.
-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태. (2021).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95, 8-24.
- 김미선. (2001).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서울: 청년의사.
- 김석호.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김승섭, 류현철, 이주연, 강명주, 김광호, 문길주, 우삼열, 윤진규, 이지연 & 최종만. (2024).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0-0.
- 김윤배. (2017).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 경기도: 한울아카데미.
- 김주영. (2021).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현황과 특징. *시민사회와 NGO* 19.2 (2021): 139-190.
- 김창엽, 김명희, 이태진, & 손정인. (2015). 한국의 건강 불평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춘수. (2022). 이주와 노동.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 노지현. (2016). 남성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후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8(1), 23-52.
- 노지현, 강선경. (2016). 산업재해를 겪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경험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사회복지정책*, 43(1), 135-164.
- 류현철 외 (옮김). (202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 및 행정조직 선진화를 위한 로벤스 보고서: 번역 및 해제. 이은주 의원실 정책보고서. 이은주 의원실.
- 박승봉. (2025.6.13.). 최근 5년간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453명..."사망률, 내국인의 7배".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13000908> (검색일: 2025.7.5.)
- 박재현, 박동준 & 이철민. (2017).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분석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9(2), 69-80.
- 법무부. (2025. 3. 19.) 보도자료_2024년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enc=Zm5jdDF8QE8JTJGYmJzJTGaW1taWdyYXRpb241MkYyMTQ1MkY1OTMwOTU1MkZhenRjbFZpZXcuZG81MOZwYXNzd29yZCUzRCUyNnJnc0JnbmR1U3RyJTNEJTI2YmJzQ2xTZXE1MOQ1MjZyZ3NFbmRkZVNOciUzRCUyNm1zVm1ld01pbmU1MORmYWxzZSUyNnBhZ2U1MOQxJTI2YmJzT3B1b1dyZFN1cSUzRCUyNnNyY2hDb2x1bW41MOQ1MjZzcmNoV3JkJTNEJTI2> (검색일: 2025. 7. 5.)

- 송연이, 김희걸, 이꽃메, 정혜선, 김현리, 현혜진, & 김정희. (2007).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 보건 지원체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6(1), 67-77.
- 송지영 & 정종민. (2025). 산재 인정의 사회적 실재 :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A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48, 165-192.
- 신지원, & 채준호. (2024).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위험의 이주화: 영국 건설업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8-37.
- 이상지, 최서리. (2021). 국내 외국인 아동정책의 특징과 제도적 개선방안: 이분법적 담론과 부모 지위 종속의 한계. *현대사회와다문화*, 11(3), 1-37. 10.35281/cms.2021.08.11.3.1
- 이영주, 이승민, 김영환 (2017).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연구동향 네트워크 분석. <지역발전연구>, 26(3), 101-125.
- 이창규. (2024).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 신고 양지화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서울.
- 이형진. (2023).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책무성과 성과에 대한 연구. *NGO 연구*, 18(3), 127-179.
- 전용일. (2023).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 정윤채, 신혜림, 이채현. (2023.11.28.) 전국 9개 거점 외국인 지원센터 내년 문 닫는다. 단비뉴스. <https://url.kr/eseblo>
- 정진주, 김향수, 박정희, 정영훈, 진현주. (2017). 『결국 사람을 위하여 :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활동가들의 생애사』. 소이연.
- 한국경제신문. (2023.10.12). '산재 미보고' 5년간 4천146건...과태료 총 257억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22820Y> (검색일: 2025.7.5.)
- 한정훈. (2019).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8(1), 123-159.
- 행정안전부. (2024.10.24.). 보도자료_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46만 명, 총인구 대비 4.8%, 역대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8&nttId=113228
- Allen-Hammer, K., Goldberg, L., Kellogg, E., Underwood, K., & Vander Linden, K. L. (2022). Experiencing Grounded Theory: A Review. *Grounded Theory Review*, 21(2).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 서울.
-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ition)*. Sage publications.
- De Castro, A. B., Fujishiro, K., Sweitzer, E., & Oliva, J. (2006). How immigrant workers experience workplace problems: a qualitative study. *Archives of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61(6), 249-258.
- Foley, G., Timonen, V. (2015).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to capture and analyze health care experiences. *Health Services Research*, 50(4), 1195-1210.
- Fugard, A. J., & Potts, H. W. (2015). Supporting thinking on sample sizes for thematic analyses: a quantitative too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8(6), 669-684.
- Fusch Ph D, P. I., & Ness, L. R. (2015). Are we there yet? Data satur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 Kim, J. M., Son, K., Yum, S. G., & Ahn, S. (2020). Analyzing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The relative risks of migrant workers in construction industry. *Sustainability*, 12(13), 5430.

- McAuliffe, M., & Oucho, L. A. (Eds.). (2024). World migration report 2024.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Shannon, G. (2016). Precarious Claims: The Promise and Failure of Workplace Claims in America.
- Stake, R. E. (2000). 질적사례연구(홍용희 역). 창지사: 서울.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홈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정보시스템_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941#187235> (검색일: 2025.7.5.)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14 (검색일: 2025.7.5.)
- 근로복지공단_외국인근로자 산재처리현황.
<https://www.data.go.kr/data/15104688/fileData.do?recommendDataYn=Y> (검색일: 2025.7.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_외국인근로자와 체류 자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42&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EC%99%B8%EA%B5%AD%EC%9D%B8%20%EC%B7%A8%EC%97%85%EC%9E%90 (검색일: 2025.7.5.)
- 법무부. 2025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7/594384/artclView.do> (검색일: 2025.7.5.)
- 법무부. 출입국 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검색일: 2025.7.5.)
- KOSIS. 고용허가제고용동향. 행정구역(시도)/업종별 일반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T_11827_N001%26orgId%3D118%26 (검색일: 2025.7.5.)

<부록>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8. 5.>

장기체류 자격(제12조 관련)

체류 자격 (기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 (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 (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 (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11. 기업투자 (D-8)</p>	<p>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p>12. 무역경영 (D-9)</p>	<p>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3. 구직 (D-10)</p>	<p>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예술홍행(E-6) 체류 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14. 교수 (E-1)</p>	<p>「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p>
<p>15. 회화지도 (E-2)</p>	<p>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p>
<p>16. 연구 (E-3)</p>	<p>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7. 기술지도 (E-4)</p>	<p>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p>

	람
18.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홍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의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 (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3. 방문동거 (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 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 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p>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24. 거주 (F-2)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p>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 자격 외의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 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 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25. 동반 (F-3)	<p>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26. 제외동포	<p>「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F-4)	(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7. 결혼이민 (F-6)	<p>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8.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9. 방문취업 (H-2)	<p>가.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p>나. 활동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 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p>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p> <p>카)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p> <p>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p> <p>파) 생활용품 도매업(464)</p> <p>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p> <p>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p> <p>너)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p> <p>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p> <p>러) 무점포 소매업(479)</p> <p>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p> <p>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p> <p>서)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p> <p>어) 여관업(55102)</p> <p>저) 한식 음식점업(5611)</p> <p>처) 외국인 음식점업(5612)</p> <p>커)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p> <p>터)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p> <p>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p> <p>허)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p> <p>고)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p> <p>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p> <p>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p> <p>로) 사회복지 서비스업(87)</p> <p>모)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p> <p>보)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p> <p>소)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p> <p>오) 육탕업(96121)</p> <p>조) 산업용 세탁업(96911)</p> <p>초)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p> <p>코) 가구 내 고용활동(97)</p>
30. 기타 (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부록> 심층면담 대상자 공고문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

■ **연구 제목:**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과정과 지원체계, 활동가의 현장경험에 관한 연구

-IRB 승인번호: KUIRB-2025-0208-01

■ **모집 대상**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수행 시민사회 단체 소속 활동가

-3년 이상 현장경험 보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 문제를 지원, 업무 담당자 혹은 관련 경험을 도운 자

■ **모집기간**

모집 공고 게시 이후~2025년 10월까지

■ **연구기간**

2025년 05월~ 2025년 10월 사이 하루를 지정하여 1회 면담(1-3시간 소요)

-면담 전, 사전 질문지 전달

■ **연구장소**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가 요청하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만남(ZOOM 혹은 영상통화)

■ **참여 시 혜택**

1인당 약 3만원 상당 소정의사례 지급

■ **연구자**

연구책임자: 김수한(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참여연구원: 박정호(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문의/신청**

전화번호: 010-2809-6608

전자우편: pjh5038@korea.ac.kr / pjh5038@gmail.com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irb.korea.ac.kr>; ☎02-3290-1137, Email:kuirb@korea.ac.kr

<부록> 면담대상자 정보 및 질문지

<일반정보>

아래 사항에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가명:
2. 출생연도:
3. 현재 거주지역: _____시 _____구
4. 성별/성정체성:
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석사, 박사)/ 대학원 졸업 (석사, 박사)/ 기타_____/ 해당사항 없음
6. 졸업 대학 또는 전공: _____
7. 직장 정보(현재/전직이 있는 경우 기입)
단체명:
근속연수:
활동지역:
8. 제공사례 내용
업종, 질병, 의료/진료, 사망 및 장례, 이주노동자 관련 전반, 국가별 노동자 자문 등 (해당 사항 내용 기입)

<인터뷰 질문>

1) 소개: 이름, 나이, 소속, 경력,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관련 상담 지원에 관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2) 노동 경험과 산업재해: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일반적 상담과 산업재해와 관련된 상담의 특징이 있을까요? 공통적인 요인이나 차별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담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3)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간극:

-산업재해 관련 상담의 지원과정(산재보험, 법적 절차 등)에서 이주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지원센터와 활동가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가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지원 체계에서 개선될 지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할까요?

4) 활동가의 역할: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활동가로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이주 노동자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